

법령 정보도 카카오톡으로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

- 1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출범 15주년 맞아
- '24년 1분기 '나만의 법령집(마이데이터)', SNS 법령공유 등 기능 신설
- '24년 12월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대국민 공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출범 15주년을 맞이하여, 올해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비전을 '국민이 활용하고 만들어가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정하고, 작년 한 해 국민들이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능을 구축하여 연내에 국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선보일 주요 기능으로는 △나만의 법령집,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법령정보 공유, △퀵 가이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등이 있다.

먼저, 내가 보고 싶은 개별조문만 추가할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이 구축된다. 지금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나만의 법령'이라는 기능이 있어 이용자가 관심 있는 법령을 폴더에 담아 따로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법령 전체만을 담을 수 있고, 개별조문은 담을 수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과 이에 대한 개선 요청이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개별조문도 '나만의 법령집'에 넣어서 '마이데이터' 형식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고, 해당 기능(붙임 1 참고)은 1월 8일부터 서비스 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를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SNS에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기사 등 웹(WEB) 페이지에서와 같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국민이 필요한 법령을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쉽게 공유(붙임 2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한 안내기능도 추가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약 510만 건의 방대한 법령 정보가 담겨 있음은 물론, 핵심어(키워드) 검색, 한눈보기 등 다양한 기능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처음 이용하는 사람이나 자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요 기능을 알려주는 ‘퀵 가이드’를 마련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첫 페이지에서 게시할 예정이다. SNS를 통한 법령정보 공유 기능과 퀵 가이드는 올해 3월 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법제처는 작년에 완료된 법령정보지식베이스* 70만 건을 바탕으로 올해 12월에 인공지능(AI)이 연계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법령의 제명이나 법령용어를 정확히 알아야만 법조문을 검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반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질문, 문장 등을 통해서도 법조문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 5천2백여 건의 현행 법령과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용어 간의 관계를 규정한 데이터베이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예

법제처 지능형 법령정보 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마우스 입력기](#)
[이용안내](#)
[FAQ](#)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 검색도움말

상세검색

결과내 재검색

리걸테크 부채 관리금
건물주 경우 전세사기 고가
현금 장애인주차구역
구매 해외여행 기준
관세 반려금

가장 많이 본 법령 및 조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고용보호법 제37조의2
- 근로기준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 기초연금법 제15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11.17.]

제11조(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1.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의 전액 배상이 이루어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11.17.]

제10조(피해환급금의 결정·지급) ① 금융감독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제3조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11.17.]

제9조(피해환급금의 지급 등) ① 금융회사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피해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완규 처장은 “그동안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들의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법령정보를 보다 편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고 있는 법령검색시스템이며, 모바일·PC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에는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령해석례, 조약 등 총 510만 건 이상의 법령 정보가 구축되어 있다. 작년 기준,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80만 명, 하루 평균 법령 정보 웹 페이지의 검색 수는 1920만 회를 기록했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실 법령데이터혁신팀	책임자	팀 장	이영진	(044-200-6782)
		담당자	사무관	조병하	(044-200-6786)
		담당자	주무관	노은영	(044-200-6791)



붙임1. ‘나만의 법령집’ 개별조문 추가 방법

본문
제정 개정이유
별표 서식
연혁
3단비교
신규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조례위임조문
위임조례

권 판례
연 연혁
행 위임행정규칙
규 규제
생 생활법령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119법 시행령)

[시행 2022. 1. 6.] [대통령령 제 32070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 2. 2. 부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의 사용자가 통합됨에 따라서, 회원가입 한 번으로 양쪽 사이트에 로그인 가능하며 관심법령도 통합관리 됩니다.



로그인
GPKI/EPKI 로그인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법령 검색 문의 : 044-200-6790/6789

로그인 관련 문의 : 1577-9178

②

①

③ 로그인 여부

④



⑤

www.law.go.kr 내용:

나의 법령에 추가 되었습니다.

확인

- 4 -

붙임2. 법령정보 SNS 공유 방법 (카카오톡)

The screenshot shows the 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국가법령정보센터) website. At the top, there is a search bar and a menu icon. Below the header, there are several buttons for different types of legal information: 개정이유 (Reason for Amendment), 연혁 (History), 불편신고 (Complaint), 신규법비교 (New Law Comparison), and 3단비교 (3-Step Comparison). A red box labeled '1' highlights the share icon in the top right corner. A red box labeled '2' highlights the KakaoTalk icon in the share menu that appears after clicking the share icon. The share menu also includes options for 트위터 (Twitter), 페이스북 (Facebook), and url복사 (Copy URL).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2023.7.2.] [법률 제19425호, 2023.6.1., 제정]

국토교통부(주택임차인보호과), 044-201-417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임대인등”이란 임대인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임대인의 대리인, 그 밖에 임대인을 위하여 주택의 임대 관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자
 - 나. 임대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을 포함한다)
 - 다. 임대인을 위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자(그 피고용인을 포함한다)
 - 라. 다수 임대인의 배후에 있는 동일인

At the bottom of the page,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icons for: 본문검색 (Full-text search), 조문이동 (Move to clause), 책갈피 (Bookmark), 메모 (Memo), 확대/축소 (Zoom in/out), 인쇄/저장 (Print/save), and 음성지원ON (Voice support ON).

③ 아래 그림과 같이 카카오톡으로 법령정보 공유

